

야생생물 []수출 · []수입 []반출 · []반입 허가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살아 있는 야생생물,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·혈액·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인 경우 (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 10일 가공품인 경우는 5일
------	-----	---

신청인	① 상호(명칭)	② 성명(대표자)
	③ 사업장 소재지 (전화번호:)	

실수요자	④ 상호(명칭)	⑤ 성명(대표자)
	⑥ 주소 (전화번호:)	

수출(수입) 명세

⑦ 품목 번호(HS)	⑧ 품명			⑨ 규격 (성별, 연령)	⑩ 수량	⑪ 단가 (US \$)	⑫ 금액 (US \$)	⑬ 수출입 국
	학명	국명	보통명					
⑭ 용도	<input type="checkbox"/> S <input type="checkbox"/> Z	<input type="checkbox"/> P <input type="checkbox"/> T	<input type="checkbox"/> E	⑮ 사육장 주소		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야생생물의 수출[]·수입[]·반출[] 또는 반입[]의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

-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
 -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 - 해당 야생생물(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)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수송계획서(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)
 -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(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,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)
-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
 -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 - 사용계획서
 - 수송계획서(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)
 -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(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합니다)
 -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(협약 부속서 III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 -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·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인공 사육·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합니다)
 -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(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,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)

수수료
없음

작성방법

- ⑧ 품명란은 학명, 국명 및 보통명(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)을 적습니다.
- ⑨ 규격란은 살아 있는 야생생물의 경우에는 암수·연령 등을 적고, 그 밖의 경우에는 생산품 또는 가공품을 적습니다.
- ⑩ 수량란은 살아 있는 야생생물의 경우에는 마리 수, 그 밖의 경우에는 단위(Kg 등)를 적습니다.
- ⑫ 금액란은 수출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(FOB), 수입의 경우에는 운임·보험료 포함가격(CIF)을 적습니다.
- ⑬ 수출입국란은 수입국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적고, 수출국의 경우에는 신용장 등에 명시된 도착 국가를 적습니다.
- ⑭ 용도란은 S(학술연구용), Z(동물원의 관람용), P(일시 체류 목적인 자가 애완용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, 1인당 1마리), T(번식·판매용, 인공증식된 개체만 가능), E(기타) 중에 하나만 선택합니다.

처리절차

